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호	제2025-206-130호(사건번호 : 2023조총0183)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5. 3. 26.

주 문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 유

피심인이 '23. 7. 20.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를 잠금장치가 없는 책상에 보관한 것은 舊「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9호)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3월 26일

위원장 이문한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